對 外 秘

2015. 3. 12.

단독판사회의 관련 보고

▣ 2015년 상반기 단독판사회의

- 3. 16. 16:00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개최
- 현 집행부
  - 의장 : 김○○ 판사(30기)
  - 간사 : 허○(30기), 김○○(33기, 전출), 유○○(34기, 전출), 홍○○(34기)

▣ 동향

- 김○○ 판사는, 판사회의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장이 입후보, 경선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선출되어야 한다는 입장 ⇨ 관례에 따른 최선임자 의장 추천 및 선출이 아닌, **의장으로서 실제 활동할 의지를 가진 판사의 입후보를 추진** 중
- 김○○ 판사, 3. 9.자 메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지함

1. 후보자 자원 및 추천
가. 시한 : 목요일(12일) 24:00까지
나. 방식 : 이 코트넷 메일에 대한 답장 형식
다. 후보자의 요건 : 단독판사회의의 구성원(단독판사 및 단독판사와 배석판사를 겸하는 판사)으로서, 자원을 한 사람 또는 복수의 구성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(즉, 이 코트넷 메일에 대한 답장 형식의 추천이 2인 이상으로부터 이루어진 경우)

2. 후보자 공지 : 금요일(13일) 9:00까지 코트넷 메일로 공지함

3. 후보자 사퇴 :
가. 시한 : 금요일(13일) 12:00까지
나. 공지 : 금요일(13일) 14:00까지 코트넷 메일로 공지

4. 표결 : 구성원의 과반 출석으로 개의, 출석자의 과반 득표자로 선출하되, 과반이 되지 않을 경우 다수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 투표
* 후보자가 1인인 경우 : 출석자의 과반이 찬성하는 경우 선출
* 후보자가 없는 경우 : 현장에서 추천을 받아 후보자가 1인 이상인 경우 다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결 진행

- 김○○ 판사는 최선임자 6인(29기 3인, 30기 연장자 3인에 대하여 입후보를 독려하였으나, 모두 거절하였다고 함

성명	생년월일	전입일자	기수
장○(張○)	(이하 열 삭제)	(이하 열 삭제)	29
이○○(李○○)			29
이○○(李○○)			29
정○○(鄭○○)			30
박○○(朴○○)			30
차○○(車○○)			30

▣ 전망

- 입후보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의장이 입후보 절차를 공지하였고, 그 절차에 큰 하자가 없는 이상, 공지된 절차에 따라 입후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
- 김○○ 판사는 제3의 후보(특히, 인권법 학회 회원)를 물색하여 입후보를 독려할 가능성 있음
- 장○ 판사, 또는 실질적인 독장이라고 할 수 있는 30기 최선임자 정○○ 판사가 의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, 제3의 후보가 입후보한다면 작년과 같이 경선이 예상됨
- 소수의 의사가 다수 의견인 것처럼 호도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판사회의 당일 적극적인 출석을 독려 중